

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년 7월 일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 신규시설(대화도서관)설치에 따른 관리·운영인력 증원과 부서별 조직정비에 따른 행정기능 보강 및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 정원을 증원·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32인에서 11인이 증원된 "543"인으로 조정함 (안 제2조)

- 집행기관의 정원 : 523명 ⇒ 534명(증 11명)

※ 증원사유

- 신규시설(대화도서관) 정원책정 : +5명
-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정원책정 : +1명
- 행정기능보강 : +5명
- 관광업무 1, 개발허가업무 1, 농업유통업무 1, 환경농업업무 1, 농지전용업무 1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참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마. 신·구조분대비표 : 별첨참조
- 바. 조례·규칙심의회 : 제11회 평창군조례·규칙심의회(2003. 7. 25)원안의결

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중 총수 "532명"을 "543명"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"523명"을 "534명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32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523명</p> <p>2. 의회사무과의 정원 : 9명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543명으로 ----- -----</p> <p>1. ----- : 534명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03조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~⑤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제21조(정원의 규정)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
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~④(생략)